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설치지역 선정의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Selecting Priority Regions for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Centers

신나리 · 송신영 · 이은경*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육아정책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Shin, Nary · Song, Shinyeong · Lee, Eungyoung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select vulnerable regions with insufficient child care services based on an in-depth investigation of divers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o establish a practical goal for the expansion of public child care centers through identifying priority regions in foremost need of public child care centers out of the vulnerable regions. The vulnerable regions were selected from both urban and rural areas with particular criteria to determine their critical situation. First of all, the number of children aged zero to five, private and public child care centers, and capacity and enrolment of the regional child care center were selected from towns (Eup) and townships (Myeon) within rural areas and neighborhoods (Dong) within urban areas to calculate the capacity fulfillment. Specifically, a dense population of low-income families inhabited within urban areas defined the region's vulnerable status for the analysis, whereas poor accessibility of a child care center within rural areas correspond to the lack of child care services. The analytical result displayed that a total of 456 towns and townships did not acquire child care centers. Out of 456 towns and townships, 162 were selected as priority regions. On the other hand, 546 neighborhoods corresponding to upper 30 percentiles of urban area where children receive basic subsidy for low income families were selected as vulnerable regions. Out of 546 neighborhoods, 243 were selected as priority regions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

Keywords : public child care centers, vulnerable regions, priority regions

I. 서론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의 비율은 공식 보육통계 제공 원년인 1990년 48,000명에서 2008

년 말 현재 1,135,502명으로 23배가 넘게 증가하여 왔다. 이 중 민간보육시설의 이용 아동수는 보육 3개년 확충사업 등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민간보육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차등보육료 및 기본보

† 본고는 보건복지가족부 수탁과제로 수행된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방안(2009)」 연구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Lee, Eungyoung

Tel: 02-3277-3098, Fax: 02-3277-3525

E-mail: ophilia14@hanmail.net

조금 등의 재정지원 확대 등의 정부 시책에 힘입어 1,500명에서 669,46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같은 기간 25,000명에서 123,405명으로 그 증가량이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이러한 현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육은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보육 중장기계획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수를 2005년 1,352개소에서 2010년까지 2,700개소로 2배로 확충하고 향후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0% 수준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총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 공보육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총 1,826개소로 정부가 목표로 한 확충 계획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의 연도별 국공립보육시설 증가 추이를 보면 전년도 대비 2004년에는 20개소, 2005년에 124개, 2006년에 175개, 2007년에 105개, 2008년 78개소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보건복지가족부, 2009b),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충 속도는 매우 더디므로 2010년까지의 2,700개소 달성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신규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부지매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민간시설의 반발 등 예산 이외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영유아가 싼값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여러 측면 중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점 중 하나로 공급측면의 지역적 형평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취약지역을 우선설치지역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추진

해야 함은 명백하다(서문희, 2004). 즉,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취약계층의 영유아로 하여금 보다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취약지역은 민간시설이 진입을 기피하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공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 일뿐더러 민간보육시설의 반발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교적 어려움 없이 신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08년 새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보육계획안인 「아이사랑플랜」이 2009년에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기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같이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목표가 아닌 보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확충 목표를 우선설치지역인 보육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제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 설정에 관한 노력은 국가수준의 몇몇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먼저 2004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서문희 외, 2005)」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규모 산출 연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문희 외(2005)는 영유아가구 대상의 가구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시군구별로 산출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공급률과 수요율을 적용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추가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188개 시군구에 118,705명의 영아보육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고, 46개 시군구는 추정 공급률이 수요율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만 3~5세 유아의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수요는 234개 시군구 중 97개 시군구에 40,359명 추가 수요가 있고, 유치원은 79개 시군구에 72,228명 추가 수요가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함께 고려하면 48개 시군구에 55,599명 추가 수요가 추정되었다. 이에 서문희 등은 산출된 추가수요 중 50%를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하고 나머지 50%는 자연 증가되는 민간보육시설로 충족되도록 한다고 가정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필요 수를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 추정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산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나, 대규모 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과 산출된 보육수요에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국적인 확충계획은 가능하나 어느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지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해 서문희 외(2006)는 당시 전국의 읍면 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516개 읍면 지역을 검토하여 보육시설 설치 계획을 제안하였다. 단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무조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적·물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으므로 보육시설 미설치 면이 2개 이상이고, 이들 면이 밀집되어 미설치 읍이 집중된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읍이나 인근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140개 읍면에 보육시설과 같은 보육서비스 공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촌 지역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보육취약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볼 때 140개소라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공급규모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먼저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연구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취약지역인 도시지역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김진 외(2007)의 연구에서는 먼저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소재한 국공립보육시설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초과수요를 산출,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 각 시군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위해 시군구별 1인당 재산세를 이용하여 보육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과수요도 비교적 높고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구로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에서 총 10개의 시·군을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울산, 대전, 인천, 대구 등의 대도시 일부 구와 경상북도 및 강원도의 2개 시를 포함한 8개 시·구를 2순위 지역으로 선정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는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을 포함하였으며, 각 지역의 보육서비스 공급 수준뿐 아니라 소득 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1인당 재산세에 대한 분석이 시군구 수준에서만 가능한 관계로 읍면동 수준에서의 분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정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설치할 지역을 선정하여 그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보육인프라가 취약한 취약지역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우선설치지역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취약지역 또는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보육시설 설치 여부, 지역의 소득 수준 등 단일 변인만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단일 변인만으로는 개별 지역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활용 가능한 변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취약지역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접근하였으나 한 시군구 내에서 읍면동 간의 차이가 매우 크며, 보육시설이라는 특성상 접근성은 상당히 중요한 변인이므로 가급적 가장 세분화된 지역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새로운 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인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보다 실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확충을 위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확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기 위해 기존연구와는 달리 국공립시설 확충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읍면동 수준에서 역별 제반 특성과 보육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에 기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침 상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지역을 보육취약지역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모든 보육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우므로,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설치하여야 할 지역을 우선설치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들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농산어촌의 보육취약지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우선설치지역은 어디인가?

둘째, 도시의 보육취약지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우선설치지역은 어디인가?

II. 우선설치지역 선정 기준에 관한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설치 할 읍면동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할 변인은 보육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읍면동 수준의 자료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수합, 검토한 결과 다음의 2차 자료가 우선설치지역 선정에 활용되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보육시설 수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변인으로, 읍면동별로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가장 먼저 검토되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수 또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의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이 또한 함께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수를 설립유형별로 수합하여, 전체 보육시설 수와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를 2008년 9월 말 기준 자료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합된 보육시설 명부인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인구 유입 정도 등에 따라 동분할, 동통폐합 및 동명개정 또한 함께 시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 등에서 제공되는 주요 자료는 개정 후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서는 개정 전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주소는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인 법정동으로 되어있는 반면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은 법정동의 범위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행정동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법정동명으로 작성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수합된 보육시설 명부의 주소는 행정동명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2. 아동 수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있다 하더라도, 읍면동별 보육시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지

역 내에 거주하는 보육서비스 대상 연령 아동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취학 전 아동 수를 수합하였다. 취학 전 아동수는 0세부터 만5세까지 각세별 인구수로 정의하였으며, 2008년 9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3. 보육시설 정원 및 현원

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많더라도 보육시설 수 또한 많은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낮을 수 있다. 이에 읍면동별로 보육시설 개소수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확인하고, 정원충족률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2008년 9월 말 현재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보육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수합하고, 이를 기초로 보육시설별 정원충족률을 산출하여 도시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지역 선정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단,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보육시설 명부의 주소는 법정동명이므로, 이를 행정동명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4. 유치원 수

지역별 보육시설 정원충족률은 아동수와 보육시설 수 이외에도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특성상 필연적인 것이므로, 지역별 유치원 개소수는 추후 설치될 국공립보육시설 수요에 중요한 변인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이용비용은 큰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읍면에 공립유치원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있는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유치원의 설립 유형은 읍면지역의 보육시설 요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유치원 개소수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수합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의 원자료인 설립유형별 유치원 명부를 2008년 12월 현재 자료로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수합된 유치원 명부의 주소는 법정동명이므로, 이를 행정동명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다.

5. 수급아동비율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역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

준이 되는 변인은 해당 지역 가구의 소득수준이므로, 저소득층 지역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꼽혀왔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특성상 시간 연장,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과 같은 취약보육의 요구가 높고,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이 민간시설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상교육이 가능하며, 보육료 또한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이에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변인을 활용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학교 중식지원 학생 비율,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을 기준으로 교육복지 수율을 정의하고 있다.

이 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시군구 수준의 2차자료이므로 이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학교 중식지원 학생 비율 또한 영유아가구가 아닌 초중등학교 학생 가구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선정을 위한 자료로 동별 자료 활용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비율을 활용하였다. 지역별 수급아동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부자료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합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0세~만5세 수급아동수를 사용하였다. 단, 2차자료의 제한점으로 인해 전국의 2,158개동 중 수급아동수 자료가 제공되는 1,982개동만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으므로, 178개동은 취약지역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수급아동수 자료가 행정동 개정 전 자료이므로, 행정동이 분할된 경우는 개정 전 동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아동비율을 산출한 후 개정 후 해당 동에 일괄 활용하였다.

Ⅲ. 우선설치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고찰 및 결과

1. 농산어촌의 우선설치지역 선정 절차 및 결과

1) 농산어촌의 보육취약지역 선정 절차

농산어촌의 보육취약지역은 일차적으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았다. 이는 농산어촌이 취약

지역으로 구분되는 일차적인 이유가 소득수준이 낮아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보다는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서문희 외, 2007). 농산어촌은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보고, 전국의 읍면별로 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보육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행정구역상 읍면에 해당하는 1,411개 지역 중 국공립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총 457개 읍면이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 농산어촌의 우선설치지역 선정 절차

농산어촌에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보육취약지역 457개 읍면 중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우선설치지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 가장 먼저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설치를 위한 지역 선정을 위해 관련 변인들 중 먼저 유치원의 설치 여부가 농산어촌지역의 취약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는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 유아반에 해당하는 만3세~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의 설치가 보육시설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김은설 외(2007)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치원 설치 여부에 따라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은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취약한 지역은 보육시설 뿐 아니라 유치원 또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며(A 유형), 다음은 보육시설은 미설치,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은 미설치이나 사립유치원이 설치된 지역이다(B 유형).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공립유치원이 설치된 지역이므로 사립유치원의 설치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표 1 참조).

또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대상인 영유아의 수가 희박하여 보육 수요 자체가 없을 수 있으므로 보육대상 영유아의 절대 수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서문희 외, 2007). 따라서 지역별 0세~5세 사이의 인구수를 읍면별로 수합하여 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 때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영유아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설치 및 운영상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이 지양되는바, 소규모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 규모인 40인 시설 신설할 경우 해당 읍면에서 요구되는 영유아수를 그 두 배에 해당하는 80인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지역

중 0세~5세 영유아수가 80인 이상인 경우는 모두 우선 설치지역에 포함하였다. 다만 각 지역에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유형의 유치원인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즉, 80인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중 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A-1 유형)이 최우선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았으며, 80인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중 사립유치원만 있고 국공립유치원은 없는 지역(B-1 유형)이 다음으로 시급한 취약지역, 영유아가 80인 이상인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설치된 경우는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시급하지 않은 지역을 볼 수 있다(C-1 유형).

한편, 0세~5세 사이의 영유아가 80인 미만인 지역 중 일부는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도서지역이다.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의 특성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도서지역의 경우 섬 안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도서지역은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우선설치지역에 포함하였다. 또 다른 유형은 영유아가 80인 미만인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여럿이 인접하여 미설치 지역의 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변의 일부 읍면에 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수요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읍면이 권역을 형성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1개 읍면을 선정하여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권역에서 우선설치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① 유치원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 ②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③ 미설치읍면 권역 중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역의 기준 순으로 가장 부합한 읍면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한 권역이 2개 이상의 군을 포함하는 경우는 각 군에 A-1, B-1, C-1 유형에 해당하는 읍면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들 유형에 해당하는 읍면이 없는 군을 선택하여, 가급적 특정 군에 확충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3) 농산어촌의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이상과 같은 농산어촌의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의 선정 절차에 따라 보육취약지역의 여러 특성 중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설치 여부, 영유아수, 주변 읍면의 보육취약지역 선정 여부, 도서지역 여부 등의 기준

이 고려되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총 162개의 읍면이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모두 없으며 영유아수가 80명이 넘는 읍면(A-1 유형)이 가장 먼저 선정되었으며, 영유아수가 80명 미만인 21개 읍면은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총 5개 읍면이 선정되었다(A-2 유형). 이들 지역은 우선순위 상 보육취약지역 중 가장 시급하게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우선설치지역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설치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전국적으로 2개에 불과하였다. 이중 영유아수가 80명이 넘는 1개 지역(B-1 유형)은 우선설치지역에 포함되었으나, 80명 미만인 1개 면(B-2 유형)은 도서지역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보육취약지역 권역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우선설치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상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지역은 보육취약지역 중 공립유치원이 설치된 지역이었다. 이 경우 영유아수가 80명이 넘는 읍면(C-1 유형)은 우선설치지역에 일괄 포함하였으나, 80명이 되지 않는 읍면(C-2 유형)은 앞서 설명된 기준에 따라 선정 여부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297개 읍면 중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6개 지역과 보육취약지역 권역에 해당하는 14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20개 읍면이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표 1> 농산어촌 보육취약지역 및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유치원 설치 여부	영유아수 (0세~5세)	보육취약 지역 수	우선설치 지역 수	설치 시 우선순위
A. 유치원 미설치	A-1. 80명 이상	5	5	1
	A-2. 80명 미만	21	5	2
B. 사립유치원 설치 및 공립유치원 미설치	B-1. 80명 이상	1	1	3
	B-2. 80명 미만	1	0	-
C. 공립유치원 설치	C-1. 80명 이상	131	131	4
	C-2. 80명 미만	297	20	5
계		456	162	

<표 2>에는 16개 시도별로 농산어촌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지역이 36개 읍면으로 가장 많고, 경북에서 28개 읍면, 충남에서 27개 읍면이 선정되었다. 또한 광역시 중 울산시와 인천시 소재 읍면 지역도 각각 2개와 5개가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표 2〉 시도별 농산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 선정 지역 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
인천	-	-	-	2	3	5
울산	-	-	-	2	-	2
경기	1	-	-	5	-	6
강원	-	-	-	3	1	4
전남	1	2	-	30	3	36
전북	-	1	-	20	2	23
경북	1	1	-	23	3	28
경남	2	-	-	17	5	24
충남	-	1	1	25	-	27
충북	-	-	-	4	3	7
계	5	5	1	131	20	162

2. 도시의 우선설치지역 선정 절차 및 결과

1) 도시의 보육취약지역 선정 절차

도시지역의 보육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고려한 변인은 각 지역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영유아 비율이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취약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들고 있는 관련 지침(보건복지가족부, 2009a)에 따른 것으로, 동 수준에서 지역별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전국의 읍면동별 수급아동 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도시 보육취약지역의 선정을 위해 가장 먼저 동별로 전체 영유아 인구수 대비 수급아동수 비율을 산출한 후 수급아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목록화하였다. 다음으로 수급아동비율이 전국의 동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 상위 10%~20%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상위 20%~30%에 해당하는 동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수급아동비율이 전체 영유아 중 4.5%에 달하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 수급아동비율이 3.1%인 상위 20% 지역, 수급아동비율이 2.2%인 상위 30% 지역에 해당하는 571개동을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도시의 우선설치지역 선정 절차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육시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요구와 특성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수급아동비율이 전국의 동 중에서 상위 30%에 속하여 도시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된 571개동 중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보육인프라를

가능하는 변인으로서 지역별로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 보육시설 정원충족률,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을 선정하여 산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먼저 고려된 변인인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은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기 위해 선정된 변인이다. 농산어촌의 경우 인구수 감소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므로 읍면별로 영유아 인구수 자체를 이용하여 보육취약지역 선정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으로 인해 영유아 수가 기본적으로 적지 않으므로 농산어촌과 같이 지역별 인구수 자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지역 내에서 신규 국공립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이를 이용할 잠재적인 수요를 알 수 있는 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각 지역별 거주 영유아 중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을 변인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요구 수준을 고려하였다. 전국 도시지역 주민등록 영유아수 대비 보육시설 현원 비율인 37.7%를 기준으로 동별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이 37.7%보다 낮은 경우(A 유형)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보육 수요가 낮은 것으로, 37.7% 이상인 경우(B 유형) 지역 내 보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정원충족률이 고려되었다. 지역 내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은 그 지역에 보육시설 공급 과잉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는 앞서 고려되었던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과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 추가적인 보육시설 설치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도시지역 소재 보육시설 전수의 정원과 현원을 이용하여 정원충족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국 도시지역 정원충족률은 81.4%로 나와, 이를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즉, 동별로 보육시설 정원충족률이 전국 도시지역 정원충족률인 81.4%보다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 내 신규보육시설 설치가 덜 시급한 지역으로(A-2, B-2 유형), 81.4% 이상인 경우 신규보육시설 설치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역으로 보았다(A-1, B-1 유형).

마지막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율을 고려하였다. 이는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고려한 것으로, 전국 동지역 소재 보육시설 개소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개소수 비율은 8.8%로 산출되었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100개소의 보육시설 중 8.8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로, 전국 기준 약 5.4개소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비교적 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비교적 높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또한 많다. 이에 위의 두 변인과는 다르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은 3개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이 전국 도시지역의 설치율인 8.8% 이상으로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된 지역(A-1-1, A-2-1, B-1-1, B-2-1 유형), 설치율이 8.8% 미만이나 0%는 아닌 지역(A-1-2, A-2-2, B-1-2, B-2-2 유형), 그리고 설치율이 0%, 즉 지역 내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A-1-3, A-2-3, B-1-3, B-2-3 유형)으

로 유형화하였다.

3) 도시의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급아동비율상 상위 30%에 속하는 보육취약지역은 보육인프라 관련 3개 변인에 따라 1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표 3>에는 보육취약지역에 해당하는 571개 동을 12개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해당하는 유형별 동 수가 제시되어있다. 이와 같이 분류된 도시 보육취약지역의 유형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시급성이 다르므로, 우선설치지역은 다음과

<표 3> 도시 보육취약지역 및 우선설치지역 선정 결과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	정원충족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수급아동 비율	보육취약 지역 수	우선설치 지역 수	설치 시 우선순위
A. 37.7% 미만	A-1. 81.4% 이상	A-1-1. 8.8% 이상	상위 10%	4	-	-
			상위 20%	8	-	-
			상위 30%	11	-	-
	A-1. 81.4% 이상	A-1-2. 0% 초과~ 8.8% 미만	상위 10%	-	-	1
			상위 20%	-	-	1
			상위 30%	-	-	1
	A-1. 81.4% 이상	A-1-3. 0%	상위 10%	14	14	1
			상위 20%	15	15	1
			상위 30%	21	21	1
	A-2. 81.4% 미만	A-2-1. 8.8% 이상	상위 10%	11	-	-
			상위 20%	6	-	-
			상위 30%	6	-	-
A-2. 81.4% 미만		A-2-2. 0% 초과~ 8.8% 미만	상위 10%	-	-	-
			상위 20%	-	-	-
			상위 30%	-	-	-
A-2. 81.4% 미만	A-2-3. 0%	상위 10%	26	26	2	
		상위 20%	27	27	2	
		상위 30%	25	25	2	
B. 37.7% 이상	B-1. 81.4% 이상	B-1-1. 8.8% 이상	상위 10%	33	-	-
			상위 20%	36	-	-
			상위 30%	42	-	-
	B-1. 81.4% 이상	B-1-2. 0% 초과~ 8.8% 미만	상위 10%	-	-	-
			상위 20%	4	-	-
			상위 30%	2	-	-
	B-1. 81.4% 이상	B-1-3. 0%	상위 10%	32	32	3
			상위 20%	40	40	3
			상위 30%	47	-	-
	B-2. 81.4% 미만	B-2-1. 8.8% 이상	상위 10%	25	-	-
			상위 20%	21	-	-
			상위 30%	10	-	-
B-2. 81.4% 미만		B-2-2. 0% 초과~8.8% 미만	상위 10%	-	-	-
			상위 20%	5	-	-
			상위 30%	4	-	-
B-2. 81.4% 미만	B-2-3. 0%	상위 10%	43	43	4	
		상위 20%	28	-	-	
		상위 30%	25	-	-	
계				571	243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1순위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A-1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소재한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은 높았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 지역 내에 없는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중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이 전국 수준인 8.8%보다 더 많은 지역(A-1-1 유형)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된 관계로 지역의 보육인프라를 요구하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확충할 당위성은 부족하다. 이에 A-1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 A-1-1 유형에 해당하는 23개동을 제외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A-1-3 유형) 설치율이 일정 수준 미만(A-1-2 유형)인 지역만을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고려된 지역은 A-2 유형에 해당하는 동으로,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낮고, 설치된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도 낮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보육서비스 요구가 낮은 지역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용률과 정원충족률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A-2 유형의 경우는 설치율에 상관없이 국공립보육시설이 기 설치되어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만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아동비율도 높고 정원충족률도 높은 B-1 유형을 검토한 결과, A-1 유형과 A-2 유형에 속하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공립시설의 설치가 시급하지 않았다. 즉, 지역 내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비교적 많으며 정원충족률도 높은 지역의 경우, 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기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부모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요구도 또한 높으므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급아동비율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1, 2순위로 고려된 지역들과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B-2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많으나 전반적인 정원충족률은 낮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보육시설이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지역에 추가적인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공급 과잉의 상태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급아동비율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를 설치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1, 2, 3순위로 고려된 지역들과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수급아동비율,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 정원충족률 및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을 기준으로 도시 취약지역 중에서 총 243개동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보육취약지역 중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현황은 <표 3>에 함께 제시되어있다.

<표 4>에는 16개 시도별로 도시에서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36개동이 선정되어 가장 많았으며, 전북과 광주에서 각각 30개동, 29개동이 선정되었다. 반면 울산은 1개동만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은 2개동이 우선설치지역으로 포함되어 해당 지역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4> 16개 시도별 도시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 선정 지역 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계
서울	1	1	-	-	2
인천	4	2	4	-	10
대전	4	2	2	1	9
광주	3	6	10	10	29
대구	6	11	16	3	36
부산	7	10	8	2	27
울산	-	1	-	-	1
경기	-	3	1	1	5
강원	2	1	3	5	11
충남	2	4	3	2	11
충북	2	3	1	2	8
전남	3	3	5	5	16
전북	4	12	8	6	30
경남	5	8	4	2	19
경북	6	11	5	2	24
제주	1	-	2	2	5
계	50	78	72	43	243

IV. 논의

새롭게 수립된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향후 보육사업의 3대 추진 방향은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회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공보육 실현, 양질의 서비스,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참여정부에서 강조된 보육정책의 방향을 현 정부 또한 계승, 보완한 것으로, 특히 ‘국가책임제’는 기존의 아이사랑플랜에서 제시된 ‘공보육’을 보다 강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서문희, 2008). 더욱이 보육료 자율화, 전자바우처 도입, 보육시설 미이용가구 대상의 양육수당 지급 등과 같은 급변하고 있는 보육환경에 보다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공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사업의 핵심이 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공보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수행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료 산출을 위해 보다 많은 변인을 활용하여 읍면동 수준으로 분석함으로써 보육취약지역 중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지역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실제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하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접근성이 보육인프라의 핵심인 농산어촌지역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보육취약지역으로 보았으며, 이들 보육취약지역 중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이며 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최우선설치지역으로,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이며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은 설치되었으나 공립유치원은 없는 지역을 그 다음 우선설치지역으로, 공립유치원이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지역 내 영유아수가 80명 이상이면 다음 순위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지역으로 보았다. 반면 보육취약지역 중 영유아수가 80명 미만인 경우는 우선설치지역에서 제외하되, 도서지역에 해당하거나 보육취약지역이 권역을 형성한 경우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우선설치지역에 포함하였다.

한편 저소득층 비율이 취약지역의 핵심인 도시지역에서는 지역 내 수급아동 비율이 전국의 도시지역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동을 우선설치지역으로 보았다. 이 외에 동별로 지역 내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비율, 지역 내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 그리고 지역 내 보육시설 수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수 비율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치를 전국의 평균과 비교하였다. 이에 보육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은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미만, 정원충족률은 평균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은

평균 미만인 지역으로 보고, 이들을 최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미만, 정원충족률은 평균 미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은 평균 미만인 지역을 우선설치지역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이상, 정원충족률은 평균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설치지역에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평균 이상, 정원충족률은 평균 미만, 국공립보육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설치지역에 포함하였다. 이 때 수급아동 비율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우선설치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 최종 선정지역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지역에 162개 읍면, 도시지역에 243개가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되어 약 405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번 2009년에 새롭게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운 현 정부가 남은 3년에 걸쳐 매해 약 150개가량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보육 환경 조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사회협약 수준인 보육아동 30%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나, 지난 5년간 매해 증가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100개소를 상회하는 것을 볼 때 중앙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확충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비교적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로 판단된다.

단 본 연구에서 선정된 우선설치지역의 경우 2차자료의 특성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법정동으로 되어있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관련 자료는 개정된 행정동으로 전환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정동명 또한 최종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선정된 지역을 다시 법정동명을 사용 중인 현 보육행정체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중 수급아동비율 변인의 경우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결측치가 있어, 몇몇 지역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외된 읍면동 중 관련 자료가 모두 제공된다면 이 중 일부는 우선선정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제 선정된 지역의 특성은 고려된 변인에 따라 분석된 특성과 보육시설 수요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유동인구는 많으나 거주하는 가구는 적은 대도시의 도심지역 또는 유흥가 지역,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등은 보육시설의 개소수와 현원 등에서 일반적인 지

역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선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의 경우, 선정된 지역에 기계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할 때 농업정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역별로 해당 기초지자체 및 읍면동의 보육담당부서뿐 아니라 기타 관련업무부서와 함께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해당 지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및 건물 확보 등의 예산절감 노력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속한 우선설치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차별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확충 노력이 계속될 때 취약지역 영유아들에게 더욱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보육 체계 확립과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취약지역, 우선설치지역

참 고 문 헌

- 김은설, 이정원, 지성애, 이세원. (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진, 우석진, 김현숙. (2007). **합리적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보육사업안내 2009**.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보육통계**.
- 서문희. (2004). 최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97, 5-21.
- 서문희. (2008. 12). **아이사랑플랜 토론문**. 아이사랑플랜 공청회 자료집. 2008년 12월 26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
- 서문희, 신나리, 유은영. (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이미화, 김은설, 이세원. (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접 수 일 : 2009. 12. 21.
수정완료일 : 2010. 02. 03.
게재확정일 : 2010. 02. 08.